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00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5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김성주 · 김수흥

양이원영 · 윤미향 · 이광재

이수진(비) · 이용빈 · 이해식

인재근 • 진성준 • 홍성국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축산업의 허가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.

또한,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가축 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대한 내용이 없어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들이 가축분뇨처리와 악취저감을 중요한 준수사항으로 인식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(안 제22조제2항제3호·제4항제3호),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의 의무를 두어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제3호 중 "장비 등"을 "장비,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등"으로 한다.

제22조제4항제3호 중 "장비 등"을 "장비,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등"으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"향상을 위하여"를 "향상,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축산업의 허가 등) ① (생	제22조(축산업의 허가 등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	②
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	
추어야 한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·	3 <u>장비, 가축</u>
<u>장비 등</u> 을 갖출 것	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
	<u>드</u>
4. ~ 7. (생 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3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	4
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	
어야 한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·	3 <u>장비, 가축</u>
<u>장비 등</u> 을 갖출 것	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
	<u>등</u>
4. ~ 7. (생 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
⑤ ~ ⑧ (생 략)	⑤ ~ ⑧ (현행과 같음)
제26조(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	제26조(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
등의 준수사항) ① 제22조제1	등의 준수사항) ①
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	
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	

축/	사-	육업	의	등	록을	<u> </u>	한	자는		가
축:	의	개등	냥,	가축	후질	병 :	의	예방	-	및
축	산	물의	우	· 생	수급	<u> </u>	향	상을		위
<u>하</u>	혀	농	김축	산	식퓓	두부	·령	으로		정
하	는	사형	하을	・ス	켜() <u></u>	한	다.		

② (생 략)

향상, 가축

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
② (현행과 같음)